



시 보



제1689호 2025. 4. 14. (월)

조 례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2
○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9
○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13
○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27
○ 목포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4
○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37
○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41
○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46
○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48
○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67
○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74
○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77
○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80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3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86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88
○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92

규 칙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98
-----------------------------	----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69 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제43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위반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위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경고, 공개사과
7.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 회의장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요구 불응 ○ 회의 중 소란행위로 발언 방해, 허가 없이 연단·단상 등단 ○ 지방자치법·회의규칙 등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u> ----- ----- ----- ---
제9조(징계 등)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9조(징계 등)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u>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0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 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 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1.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7. <u>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 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u>
<u><신 설></u>	8. <u>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u>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1 호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u>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u>	제2조 (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u>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u>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2 호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을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
 2.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복지회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 - 노인복지관----- ----- ----- ----- -----.
<신 설>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

2.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
점검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3 호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목포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목포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신치료·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
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정과 변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 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정책 제언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취업·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편의제공과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장애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결과와 장애인의 성별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4 호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지원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를 “지원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및 서비스 제공업소 등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생략)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지원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u>
제6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	② ----- <u>지원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u>
<신설>	③ <u>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u>
<신설>	제7조의2(환수처리)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u>

<신 설>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및 서비스 제공업소 등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5 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새마을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조(위생·안전 교육 등)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 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생·안전 교육 등) ① ----- ----- ----- <u>실시할 ---.</u>
<신설>	② 시장은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새마을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6 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예방교육 및 홍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u>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u>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사업) ----- ----- ----- <u>예산의 범위에서</u>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u> -----. 1. <u>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u> <u>교육</u> 2. <u>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u> <u>치유 지원</u> 3. <u>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u> 4. <u>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u> <u>홍보 사업</u> 5. <u>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u> <u>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사항</u>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7 호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 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차량등록 관련 업무

8.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한도액)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목포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8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 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 <단서 신설>	4. ----- ----- . <u>다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한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79 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1(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도액 월1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0 호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
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 및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1 호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3.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
6. 도시·제조·농수산업·문화·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
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2 호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3 호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 상 진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 3884 호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목포시 섬지역 주민의”를 “목포시민의 섬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운임, 차량과 농기계운임과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을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임지원 대상)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섬 지역 주민을 제외한 시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부정사용하여 섬지역 주민”을 “부정사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섬지역 주민이 아닌 자가 섬지역 주민 승선권”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할인승선권”으로 한다.

제11조 중 “섬 주민의 운임지원에 관하여 이”를 “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u> <u>운임지원에 관한 조례</u>	<u>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u> <u>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제35조의2에 따라 <u>목포시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여객선운임(이하 “운임” 이라 한다)” 이란 「<u>해운법</u>」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u>여객운임, 차량과 농기계운임과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u> <신 설>	제1조(목적) ----- <u>목포시민의 섬지역</u>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여객운임 차량운임 및</u> ----- ----- ----- ----- ----- 6. “<u>목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u>” 이란 <u>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u>

제3조(운임지원 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그 승선일 기준으로 목포시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목포시 관할 섬간을 이동하는 섬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생략)

<신설>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생략)

②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섬지역 주민 할인 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섬지역 주민이 아닌 자가 섬지역 주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섬 주민의 운임지원에

제3조(운임지원 대상)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섬 지역 주민을 제외한 시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승선일 기준 정규 운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부정
사용하여 -----

2. (현행과 같음)

③ -----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할인승선권-----

--.

제11조(준용) 이 -----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5 호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로,
“유산 등”을 “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연임”을 “필요시 연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인”을 “필요시 분야별 3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분야”를 “관계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
입안”을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 입안”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중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국가유산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향토유산 지정 기준)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2. 지역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
4. 그 밖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지역문화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변형되지”를 “변형 또는 손상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가유산 관련분야”를 “향토유산 관련 분야”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홍보 및 활용)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홍보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향토유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견학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광객 방문, 지역홍보 또는 교육 등을 위해 향토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관계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 4. (생략) 5. “향토유산”이란 <u>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에 있는 유산으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 등을 말한다.</u>	제2조(용어의 정의)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국가유산기본법</u> 」 <u>제3조제1호</u> ----- ----- ----- <u>유산</u> -----.
제3조(위원회) ①·② (생략)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u>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3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u> <u>한다.</u> ----- <u>필요시 연임</u> ----- -----.
제5조(회의) ①·② (생략) ③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u>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u> 한다.	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작성하여</u> --- ----- --.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u>7인</u>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국가유산 <u>관계분야</u> 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제6조(전문위원) ①—— <u>필요시 분야별 3인</u> -----. ②----- <u>관계 분야</u> ----- ----- -----. ③-----

자료수집 · 조사 · 연구 · 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 전문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 전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삭 제

2. ~ 4. (생 략)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국가유산 지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자료수집 · 조사 · 연구 · 계획 입안

-----.

제6조의2(위원, 전문위원 해촉) ----
---- 각 호의 어느 하나-----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변상) -----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
-----.

제8조(향토유산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향토유산 지정 기준) 향토
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2. 지역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호·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
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

제13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

2. ~ 4. (생략)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향토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제14조(기록보존) ① (생략)

②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4. 그 밖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지역문화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

-----.

1. -----
----- 변형 또는 손상되지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
-----.

제14조(기록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향토유산
관련 분야-----

-----.

제16조(홍보 및 활용)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홍보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향토

<신 설>

<신 설>

제16조 (생 략)

유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견학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광객 방문, 지역홍보 또는 교육 등을 위해 향토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관계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6 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운동기구 의”를 “운동기구의”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공공장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2호 중 “설치예정”을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설치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 의하여”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사 및 사전 검토”를 “조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설치방법) 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중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를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리주체) ① (생략)	제4조(관리주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 및 <u>운동기구</u> 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② ----- ----- ----- ----- <u>운동기구의</u> -----.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설치장소) ----- ----- -----.
1.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u>공공장소</u>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단서 <u>신설</u> >	1. ----- ----- <u>주민들이</u> <u>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u> <u>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u> <u>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u> <u>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u> <u>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u>
2. <u>설치예정</u>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u>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사유지</u> <u>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u> <u>설치예정</u> -----.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 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u>협의하여</u> 설치하여야 한다.	3. ----- ----- ----- ----- <u>협의하여</u> -----.

4.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생략)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신설>

4. -----

----- 경우와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

5.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

조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 -----.

1.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설치방법) 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신 설>

<신 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및 운동
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

-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 대비하여 -----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7 호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수목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 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입목의 굴취·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8조(수목 기증) 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안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화번호	

기증 나무 내역	위치				생육장소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수종		수량	주	규격	H×R(B)
	옮겨심기 희망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유					

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안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소유주 동의용)

소유자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남/여)
	성 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				
내 역	수 종	규 격	수량(주)	비 고
	계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이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안 제8조제2항 관련)

기 본 정 보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수목소재지				
	발생사유			옮겨심기 가능기간	
	수목 수량(규격)				

현 장 조 사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현장여건			
	장비투입 여 부			
	옮겨심기 가능수량			
	조치의견			
	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안 제8조제2항 관련)

[illegible]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8 호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위해 목포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의 공표)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89 호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명칭 등) ① 목포시장은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CNG 충전소를 관리·운영 한다.

② 명칭은 목포시 CNG 충전소로 한다.

③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1109-1(임성로 16)로 한다.

제3조(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 압축설비
3. 고압가스 충전설비 및 충전기 지붕 등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4조(운영일) ① CNG 충전소 운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CNG 충전소 운영 시간은 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문관리인 배치)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안전관리자)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CNG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적정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부당 청구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시설물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가격) CNG 가스 판매가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가격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0 호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를 겪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무원/보호자용): 별지7호 및 7호의 1
2. 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1 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3항) 중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가. 목포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 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⑧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② ----- ----- <u>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가. 목포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신 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신 설>	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신 설>	⑧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2 호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 전라남도 목포시
2. 전라남도 나주시
3. 전라남도 담양군
4. 전라남도 화순군
5. 전라남도 영암군

6. 전라남도 무안군
7. 전라남도 함평군
8. 전라남도 장성군

제3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
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
3.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3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변경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시행(2025. 2. 11.)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2025. 2. 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2025. 2. 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u>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u>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 <u>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u> 를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②② (생 략)	③ ~ ②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4 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목포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 (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 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포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목포시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사업 시행 후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 등)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수령자 성명	

본인은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소명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통보 내 용				
소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규칙 제 1890 호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 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라. 자료상협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연간 조사계획과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필요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실시하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의미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 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 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4.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전라남도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른 처리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시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9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

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사전에 조사장소를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25조(조사시간)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야간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5호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시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귀 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부터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목포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목포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자격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목포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목포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세정과(전화: 061-270-32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 희망장소	
	장소 선택사유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검토내용

검토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	
조사장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	팀장	부서장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청인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사업장)			

■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일자			
신청 사유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검토내용

검토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		
조사실시 일자		

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팀장	부서장
결재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61-270-3286)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 061-270-82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 포 시 **장**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목적 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제조업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건설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판매업 ()	
(전 화) (팩스)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운송업 ()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	기 타 ()	

목포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목포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우편번호 : 530-701

※ 문의사항 전화 : (061) 270-3286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사업년도별 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
- ☐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 ☐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전라남도 목포시 00동 00번지						사업장명	
------	--	-----	-------------------	--	--	--	--	--	------	--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 정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 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b)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서식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 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⑥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㉔=(㉑-㉒)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㉕×(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목포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